

의안번호	2212297
의 퇴 인	추경호 의원
회 답 일	2025.11.5.
추계번호	25E4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562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3조 5,623억원(연평균 8,9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안 제88조의2①)	-7,562	-8,461	-9,450	-10,149	-35,623	-8,90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개정안) 비과세종합저축에 <u>2029년 12월 31일까지</u>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일몰연장 기간 및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평균 소유기간(약 12개월)을 고려하여 2027~2030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평균 소유기간을 고려하여 계좌 가입과 금융소득 지급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이에 1년의 시차가 있다고 전제
- 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치에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규모 변화와 시장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규모는 2019~2024년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 증가율(7.4%)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5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한도금액은 3,373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시장금리 전망은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 대한 전망을 활용
 -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율에 따라 최종 조세지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로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의 저축(한도 5천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임

[표 2] 비과세종합저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도입연도	2015. 1. 1. 명칭 변경 (2000. 10. 21.)
일몰기한	2025. 12. 31.
지원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혜택	일몰기한까지 가입한 저축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5천만원
의무납입기간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은 9,091억원임
 - 2021년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제외되는 등 대상자 축소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
 - 2020년 1월 1일부터 직전 3개연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22년부터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저축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부터 조세지출 실적도 확대

[표 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지출액	3,386	2,575	2,554	5,461	9,091

자료: 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및 결과

□ 2019~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12월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542만명, 가입계좌는 약 1,008만개 수준이고, 한도금액은 183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은 2019년 128조원에서 2024년 18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나타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연령이 2019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 실적치 활용

[표 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2019~2024년

(단위: 명, 개, 조원, 만원)

기준연월	가입자 수 ¹⁾	계좌수 ²⁾	한도금액 ³⁾	가입자당 평균한도
2019. 12.	4,195,017	7,891,578	128	3,048
2020. 12.	4,230,086	7,799,461	130	3,063
2021. 12.	4,346,098	7,912,717	135	3,109
2022. 12.	4,897,897	8,903,875	160	3,260
2023. 12.	5,187,421	9,605,841	172	3,318
2024. 12.	5,416,950	10,085,000	183	3,373

주: 1)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

2)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

3)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치

4) 계좌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개월 수 평균

자료: 은행연합회

□ 2024년 이후 연간 시장금리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2025.10.) 활용

[표 5]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국고채 3년물	3.1	2.4	2.4	2.5	2.6	2.6
(증감율)	-	(-22.8%)	(0.0%)	(4.2%)	(4.0%)	(0.0%)

자료: 2024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5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 실적치에 2019~2024년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 증가율과 금리변동에 따른 실적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562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3조 5,623억원(연평균 8,9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안 제88조의2①)	-7,562	-8,461	-9,450	-10,149	-35,623	-8,906

IV. 부대의견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